

#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

## ☑ 생식독성물질이란 무엇인가요?

○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,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·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.

### 생식독성 물질의 종류

-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 | ▪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| ▪ 붕소산 사나트륨염(십수화물)               | ▪ 아세네이트 연        | ▪ 일산화탄소                  |
| ▪ 니켈카르보닐        | ▪ 린데인            | ▪ 붕소산 사나트륨염(오수화물)               | ▪ 아크릴아미드         | ▪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         |
| ▪ 니트로벤젠         | ▪ 메틸 노말-부틸케톤     | ▪ 1-브로모프로판                      | ▪ 알릴글리시딜에테르      | ▪ 크롬산 연                  |
| ▪ 니트로톨루엔        | ▪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    | ▪ 2-브로모프로판                      | ▪ 2-에톡시에탄올       | ▪ 톨루엔                    |
| ▪ 노말-헥산         | ▪ 2-메톡시에탄올       | ▪ 산화 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| ▪ 2-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  | ▪ 트리클로로메탄                |
| ▪ 디니트로톨루엔       | ▪ 2-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  | ▪ 수은 및 무기형태<br>(아릴 및 알킬 화합물 제외) | ▪ 2,3-에폭사-1-프로판올 | ▪ 1,2,3-트리클로로프로판         |
| ▪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| ▪ 배노밀            | ▪ 스티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▪ 오산화바나듐         | ▪ 폼아미드                   |
| ▪ 디메틸포름아미드      | ▪ 벤조 피렌          | ▪ 시클로헥실아민                       | ▪ 와파린            | ▪ 피페라진<br>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    |
| ▪ 디부틸프탈레이트      | ▪ 붕소산 사나트륨염(무수물) | ▪ 3-아미노-1,2,4-트리아졸<br>(또는 아미트룰) | ▪ 이황화탄소          | ▪ 휘발성 콜타르피치<br>(벤젠에 가용물) |

※ 출처: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2호(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)  
 ※ 각 화학물질별 세부정보는 화학물질 정보시스템(msds.kosha.or.kr)에서 확인하세요.

## 💡 생식독성의 발현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

-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증상 1 불임     | 증상 2 자연유산  | 증상 3 저체중 출산 | 증상 4 배아 사망  |
| 증상 5 선형성 기형 | 증상 6 월경 불순 | 증상 7 조산     | 증상 8 수정란 소실 |

## 📄 생식독성물질에 의한 실제 재해사례가 있나요?

1994년 OO 업체에서 세척액 SOLVENT-5200(구성성분: 2-브로모프로판 99.9%)으로 전자부품의 먼지와 불순물 제거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중, 여성 17명에게 난소기능 저하증 및 남자 6명에게 정자 생성기능 저하증이 나타남.

## 🏠 생식독성물질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요?

- |  |  |   |   |
|--|--|---|---|
| <b>1 제거 또는 대체</b><br>생식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인체에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합니다. | <b>2 안내 및 교육</b><br>생식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유해·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합니다. | <b>3 국소배기장치</b><br>생식독성물질을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. | <b>4 보호구</b><br>생식독성물질 특성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 및 피부 보호구 등을 착용합니다. |
|--|--|---|---|



유해·위험상황  
신고·상담 전화

작업장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이 걱정되세요?  
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
**1644-8595**(바로구호)로 문의하세요.